

제주지방법원 2023. 12. 18 선고 2020가단67164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수연, 강선주, 정유철, 최진수, 이동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피고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우

변론 종결2023. 8. 21.

판결 선고2023.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910,01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3.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334,129원과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30.부터,

3,899,334,1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B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1 내지 4 차수의 각 단계별로 시공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각 차수별 공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총괄계약	2015. 12. 11.	2015. 12. 15. ~ 2019. 10. 31.	20,612,969,000
1차수	2015. 12. 11.	2015. 12. 15. ~ 2016. 10. 14.	3,500,000,000
2차수	2016. 8. 19.	2016. 8. 19. ~ 2017. 2. 18.	1,784,269,000
3차수	2017. 1. 13.	2017. 1. 16. ~ 2018. 1. 15.	5,288,700,000
4차수	2018. 1. 15.	2018. 1. 17. ~ 2019. 10. 21.	10,040,000,000

다. 원고는 2016. 1.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공사의 물적 손해 등에 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4차수를 시공하던 중 2018. 7. 3. 태풍 뽀라빠룬에 의한 높은 파도로 시공 중이던 블록이 이탈하고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는 등으로 4차수 공사기간이 3개월 가량 연장되었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마. 다시 2018. 8. 22.경 태풍 솔릭에 의한 높은 파도로 블록 이탈 및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공사기간이 6개월 15일 가량 연장되었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바. 마지막으로 2018. 10. 5. 태풍 콩레이에 의한 높은 파도로 블록 이탈 및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10개월 15일 가량 연장되었다(이하 '3차 사고'라 한다).

사. 원고는 태풍 솔릭과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청구 내역과 C의 보험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태풍 솔릭 관련 청구금〉

피해복구비	1,940,963,009원	972,551,859원
잔존물 제거비	500,000,000원 (보험한도액)	
자기부담금	-500,000,000원	
합계	1,940,963,009원	972,551,859

〈태풍 콩레이 관련 청구금〉

피해복구비	2,098,462,420원	1,143,551,196
잔존물 제거비	500,000,000원 (보험한도액)	
자기부담금	-500,000,000원	
합계	1,940,963,009원	1,143,551,19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공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비로 다음과 같은 돈이 더 소요되었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비 : 5,796,411,345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생긴 추가 공사비 : 303,924,017원

합계 6,100,335,362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손해보험으로 전보받지 못한 4,100,334,129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생긴 총 비용 6,100,335,362원 - 지급받은 보험금 2,000,001,233원)과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상 천재지변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 등에 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손해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공사비용에 충당하여야 하는 사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의 '5. 손해보험'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한다.

가) 공사복구비

(1) 1차 사고로 인한 복구 공사비 : 500,000,000원

감정인 D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복구비용으로 569,579,831원으로 소요된다는 것이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과의 보험계약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관한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손해액의 20% 또는 500,000,000원 중 다액인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1차 공사로 인한 복구비용 중 자기부담금 500,000,000원을 초과한 69,579,831원은 보험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일 뿐 피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1차 사고로 인한 복구 공사비 500,00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2) 2차 사고로 인한 복구 공사비 : 556,985,996원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2차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에 2,784,929,982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556,985,996원($= 2,784,929,982 \times 0.2$, 원미만 버림)을 초과한 부분은 보험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할 부분은 위 자기부담금에 한정된다.

(3) 3차 사고로 인한 복구 공사비 : 500,000,000원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3차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에 2,441,901,532원이 소요된다. 위 돈에 대한 20%는 488,380,306원 가량($\approx 2,441,901,532 \times 0.2$)이므로 자기부담금은 500,000,000원이다. 피고가 부담할 부분은 위 자기부담금에 한정된다.

(4) 합계 : 1,556,985,996원 (= 500,000,000원 + 556,985,996원 + 500,000,000원)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손해의 범위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비용의 인정 여부에 있어 시공사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항목을 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C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상 공사 목적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보험료 부담 아래 공사계약의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할 수 있는 등 피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험금 청구 사무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복구공사비가 소요되었는데도 C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계약 내용상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C이 보험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C을 상대로 이의절차를 거치거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같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복구공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전체 공사비용이 303,924,017원이 더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액분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60,910,013원(= 1,556,985,996원 + 303,924,01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로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1차 사고에 대한 공사비 증액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임재남

1) 계약일은 최초 계약일을, 공시기간과 공사대금은 최종 변경된 것을 기재하였다.